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7

발의연월일: 2020. 6. 2.

발 의 자:이헌승·전봉민·이주환

정동만・황보승희・박수영

김미애 · 안병길 · 김희곤

윤상현 · 이양수 · 서병수

하태경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물류기본계획을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면서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방법 등에 관한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물류기본계획은 해운을 포함한 운송수단별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수립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수립지침에 따라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다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 관이 공동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수립·변경한 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절차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및 제15조).

법률 제 호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작성하여"를 "공동으로 작성하여"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거쳐야 하고, 수립하거나 변경한 지역물류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역물류기본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거쳐야 한다"를 "거쳐 변경을요구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제14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u>산부장관</u>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지침	
을 <u>작성하여</u> 특별시장 및 광역	<u>공동으로 작성하여</u>
시장(제2항에 따라 지역물류기	
본계획을 수립하는 특별자치시	
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를 포함한다. 이하 제15조 및	
제16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u>.</u>
제15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제15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① (생 략)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지	②
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	
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	
리 해당 시·도에 인접한 시·도	
의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제2	
0조의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u>거쳐야 하고, 수립하거나</u>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한 지역물류기본계획을 국

- ③ (생략)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물류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 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 의한 후 제19조제1항제1호의 물류정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u>토교통부장관에게</u>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현행과 같음)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역물류기본계 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거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